

【국어 생활 논단 4】

# 法律 文章 순화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

---

林甲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 1. 머리말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은 모두가 해방 이후 제정된 것이다. 헌법은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이래 1987년의 9차 개헌에 의해 오늘날의 법이 되었다. 이 밖에 형법은 1953년에,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민법은 1958년에, 민사소송법은 1960년에, 상법은 1962년에 각각 제정된 것이다.

한일합방 이후 우리 나라에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이란 일본 천황의 칙령과 조선총독부의 칙령에 의해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미군정기에는 '법률 제명령의 존속'이란 법령에 의해 일본 법령이 그대로 쓰였다. 이러한 일본 법령은 광복 후에도 '依用' 법률로 남아 쓰였고,

1950년대 이후 새로운 법이 제정되며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이란 것도 일본 법령을 토와 어미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sup>1)</sup> 따라서 우리의 법률 문장은 한문투의 일본 문어식으로 된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난해한 한자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면,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법이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존재하는 실천 규범이다. 이것은 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법을 번역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다 여기에는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 내지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 나라가 광복된 지도 어언 반 세기가 지났건만 법률 문장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순화해야 한다. 더구나 법률 문장은 분명하고 조리가 있어야 함에도 문법적으로 잘못된 곳도 많음에라…….

이러한 법률 문장의 문제성은 우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민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의 민사소송법의 대본이 된 일본의 법은 작년에 순화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오히려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는 우리의 법은 아직 일본 구법의 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늦게나마 대법원에서

1) 이는 민사소송법의 한 조항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제10조 [사무소, 영업소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者에 대한 訴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第9條 [事務所・營業所所在地의裁判籍] 事務所又ハ營業所ヲ有スル者ニ對スル 訴ハ其ノ事務所又ハ營業所ニ於ケル業務ニ關スルモノニ限リ其ノ所在地ノ裁判所ニ之ヲ提起スルコトヲ得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사소송법을 시작으로 왜색조의 법률 문장의 일신을 피해야 하겠다. 권위적인 규제 위주의 법이 아닌,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법으로 순화해야 하겠다. 다음에는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의 문제와 이의 순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語彙의 문제와 순화

민사소송법에는 다른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투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어휘는 법제처와 대법원에서 꾸준히 순화 작업을 전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화용어가 기존의 법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도 이러한 어휘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 2. 1. 어려운 漢字語

순화해야 할 어려운 漢字語는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상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가 많다.

이들은 규범을 지키기에 앞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말이다. 따라서 법령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이들 어려운 용어와 함께 순화어를 몇 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기(揭記)하다 - 규정하다	견련(牽連) - 관련
계속(系屬) - 걸림	계쟁물(係爭物) - 다툼거리
공무소(公務所) - 공공기관	권원(權原) - 법률상의 원인
기속(羈束) - 구속	기판력(既判力) - 구속력
대위(代位) - 자리바꿈	몰취(沒取) - 빼앗음
보장구(保障具) - 보조하는 기구	사위(詐僞) - 허위
상계(相計) - 엇셈	수계(受繼) - 계승
수액(數額) - 액수	위식(違式) - 격식에 어긋남
의제자백(擬制自白) - 자백으로 여김	전부명령(轉付命令) - 이전명령
전촉(轉囑) - 다시 맡김	제척(除斥) - 제침, 치움
직근(直近) - 가장 가까운	체당금(替當金) - 미리 충당한 돈
추완(追完) - 추후 유효하게 함	해지(解止) - 효력 소멸
환가(換價) - 현금화	흡결(欠缺) - 흠

들째, 구시대적 한문투의 용어가 많다.

구시대적 표현이란 '供하다, 扨하여, 共히, 情을 알고'와 같이 한문투의 표현에 쓰이던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나, 이러한 유형에 속할 표현도 많이 보여 준다.

공(供)하다 - 제공하다	과(科)하다 - 지우다
당(當)하여 - (를) 맞아	도과(徒過)하다 - 넘기다
발(發)하다 - 내리다	부존재(不存在) - 없음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 증거가 필요 없는 사실	
응(應)하여 - 따라	일몰후(日沒後) - 해진 뒤

해태(懈怠)되다 - 하지 못하다

셋째, 준말이라 할 어려운 용어도 많다.

경락(競落) - 경매차지

공부(公簿) - 공적 장부

서증(書證) - 서면 증거

수권(授權) - 권한 부여

유증(遺贈) - 유산 증여

인낙(認諾) - 수용

인영(印影) - 도장 자국

인증(認證) - 인정 증명

특칙(特別) - 특별 규칙

허부(許否) - 허락 여부

넷째, 일상 용어라 할 수 있는 것이나, 좀더 순화할 수 있는 말도 많다.

법률 문장이 실천 규범으로 생활화하자면 가능한 한 쉬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좀더 순화할 수 있는 말도 많다.

개봉(開封)하다 - 뜯다

고지(告知)하다 - 알리다

도래(到來)하다 - 이르다

반소(反訴) - 맞소송

병합(併合)하다 - 아우르다

열람(閱覽)하다 - 훑어보다

위배(違背) - 어긋남

차순위(次順位) - 다음 차례

파기(破棄)되다 - 깨지다

하자(瑕疵) - 흠

## 2.2 日本式 用語

일본식 용어는 우리 법률 문장의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많이 들어와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에는 음독되는 한자어와 훈독되는 한자어의 두 가지가 있다. 음독되는 한자어는 일단 귀화한 말로 보고, 순화를 유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훈독되는 한자어는 한자의 탈을 쓴 것으로 순화함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그 낱말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민사소송법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들 훈독어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가처분(假處分) - 임시 처분	가압류(假押留) - 임시 압류
기한부(期限附) - 기한이 있음	매수(買受) - 사기
매입(買入) - 사들이기	명도(明渡) - 내주기
송부(送付) - 보냄	수취(受取)하다 - 받다
인도(引渡) - 넘겨주기	인수(引受) - 넘겨받기
조건부(條件附) - 조건이 있음	지분(持分) - 몫
취하(取下) - 철회	

### 2. 3. 기타 어휘상의 문제

기타 어휘상의 문제로는 권위주의적 용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ㄴ 者', '-에 處한다', '科한다', '命한다' 따위가 있다. 이들 용어는 그 종류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문제다. 이들 용어는 어찌면 법률 문장에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도 '-ㄴ 사람', '물린다', '지운다', '하게 한다'로 순화하게 되면 위압적인 인상을 다소라도 지울 수 있어 좋다.

### 3. 文章의 문제와 순화

문장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것을 유형화해 보면 한문투의 문어체 표현, 일본어투의 표현, 비문법적인 문장, 명사구 선행, 길고 복잡한 문장, 의미 호응이 안 되는 문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3. 1. 한문투의 문어체 표현

우리의 법률 문장은 한문투의 문체, 또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 문어체의 문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한자를 잘 모르는 신세대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못 된다. 더구나 규범이란 면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제695조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認諾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命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認諾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제725조 경매절차의 開始決定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不存在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제725조는 보다 한문투의 문체에, 제695조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 문체에 속할 것이다. ‘認諾, 命한, 開始決定, 不存在’ 따위가 특히 그러한 것이다.

#### 3. 2. 일본어투의 표현

일본어의 영향은 단순히 용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문장 구조에도 나타난다. 이는 법률 문장에 일본어가 문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우리말에 필요 없는 '對シテ', 또는 '付'가 번역되어 '대하여'라고 일반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제63조 ②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對シテ) 효력이 있다.

③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付)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付) 효력이 있다.

이들 '전원에 대하여(對シテ)'나, '1인에 대하여(付)', '전원에 대하여(付)'는 각각 '전원에게', '1인에게', '전원에게'가 되어야 할 말로 '대하여'는 필요 없는 말이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일상 언어에까지 확산되어 있음을 보게 한다.

둘째, 일본 문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有ス, 在ル'가 우리 법률 문장에 어색한 '있다'의 사태를 낳고 있다. '불복이 있으면, 선고 있는, 송달이 있으면, 신청이 있는, 위반이 있음, 청구가 있는, 판결이 있는, 합의가 있으면'이 그러한 것이다. 이들은 앞에 오는 명사에 접사 '-되다'를 붙여 용언화할 때 자연스러운 우리말이 된다. '권리 있는, 명령 있는, 시가 있는, 염려 있는, 의심 있는, 이유 있다, 의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집행력 있는, 허가 있는'과 같은 말은 '있다' 아닌 다른 말로 바꾸거나 조사를 붙여 써야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되는 경우이다.

### 3. 3. 비문법적 문장

비문법적인 문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분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태, 시제, 조사 등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 따위가 있다. 성분 간의 호응은 주술호응, 객술호응, 접속호응, 수식호응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것은 문법 이전에 조리가 맞지 않는 것임을 말할 것도 없다. 다음에 접속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기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제134조 ③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금하고 또는’이라는 접속어가 잘못 쓰여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연결어미와 접속부사로 된 이 접속어는 ‘금하거나’라는 연결어미를 쓰면 충분할 것이었다. 이는 일본의 조문 ‘陳述ヲ禁シ 又ハ’를 직역함으로써 비문이 된 것이다. ‘-シ 又ハ’란 표현은 법률 문장 도처에 보이는 것이다. 다음에 태, 시제, 조사가 잘못 쓰인 예를 각각 하나씩 보기로 한다.

제189조 ③ 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제241조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153조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

제189조의 '경질한'은 수동형 '경질된'이 되어야 하며, 제241조의 '출석하더라도'는 '출석하였더라도'라고 과거시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53조의 '휴일이라도'의 서술격 조사는 '휴일로도'가 되어야 할 표현이었다.

### 3. 4. 명사구 선호

우리 법률 문장은 명사구와 동사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명사구가 많이 쓰인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딱딱한 법률 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 '-음을', '-르 것을'과 같은 형태의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디는 것을', '-도록'과 같은 동사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예를 하나씩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115조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 권리자의 동의 있음을(동의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04조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 5. 길고 복잡한 문장

법률 문장은 쉽고 간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길고 복잡한 구문의 문장이 많다. 이는 문장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누거나, 箇條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93조 ①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受訴法院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장의 길이는 50자 내외가 바람직하다(박갑수 외, 1990). 위의 문장은 109자의 긴 문장이다. 따라서 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려 이행하도록 한다. 채무자가……’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6. 의미 호응이 안 되는 문장

말의 생명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률 문장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우선 어려워서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의미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전자는 어려운 낱말을 사용한 경우이고, 후자는 비문법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한 경우와, 의미 전달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속격 조사 ‘의’, 주제격 조사 ‘은/는’ 등은 모호한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다. 속격 ‘의’는 그것이 속격인지, 의미상 주격인지, 주제격 ‘은/는’은 그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혼란을 빚게 한다. 다음 제13조는 제소의 주체가 누구인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이다.

제13조 ①회사 기타 社團의(의/이) 사원에 대한 訴 또는 社員의(의/이) 다른 사원에 대한 소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제

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괄호 속에 표시한 것처럼 '社團'과 '社員'은 관형어인지, 아니면 소송의 주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표면의 표지와는 달리 의미상의 주격으로, 소송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률 문장의 이러한 혼란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객관적인 표현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주격 표지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필요한 정보를 빠뜨렸거나 생략한 것이다. 문장의 간결성도 좋으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제152조의 '기일은 재판장이 정한다'나, 제239조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같은 것이 이러한 예이다. 여기 쓰인 '기일'이 어떤 기일을 의미하는지는 문맥만 가지고는 알기 어렵다.

조리에 맞지 않는 문장에 대해서는 '비문법적 문장'에서 언급하였기에 생략한다. 이 밖에 우리말 답지 않은 번역문투의 표현도 순화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번역문투는 법률 문장의 특징이라고 하여도 좋을 정도로 일반화한 현상이다. 매끄럽고 순한 우리의 어조로 순화할 일이다. 이 밖에 표현이 미숙한 것도 적지 않음을 부기해 둔다.

#### 4. 맺는 말

우리의 법률 문장은 전근대적 한문투의 표현과 일본어투의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여건과, 일본의 법률 문장을 번역 수용한 데 연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도 벌써 반 세기가 지났다. 그런데 우리 법률은 아직도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법의 대본이 된 일본의 법도 개정되고 있는데 말이다. 하루 빨리 국가적인 위신을 세워야 하겠다.

우리의 법률 문장은 또 문법면에서나, 의미의 면에서 많은 오용을 안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법률 문장을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법률은 실천 규범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법률 문장은 빨리 순화돼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민사소송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법률이나 법령들도 착착 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도 있듯, 새 시대에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박갑수(1984),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지학사.  
 \_\_\_\_\_(1994), 우리말 사랑 이야기, 한샘출판사.  
 \_\_\_\_\_(1994), 올바른 언어생활, 한샘출판사.

\_\_\_\_\_ (1996), “민사소송법의 순화연구”, <대법원 보고서>.

\_\_\_\_\_ 외(1990),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 언론연구원.

\_\_\_\_\_ (1990), “법률 용어 문장 왜 이리 어려운가”, <언론과 비평> 12, 언론  
과 비평사.

\_\_\_\_\_ (1997), 법률 용어와 문장의 순화, <한글사랑> 제5호, 한글사.

신각철(1995),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5-2, 국립국어연구원.